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3610
----------	-------

발의연월일 : 2019. 11. 5.

발의자 : 윤준호 · 이양수 · 오영훈

박주현 · 김성찬 · 경대수

황주홍 · 손혜원 · 박완주

김태흠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그러나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1조제1항제4호 등).

법률 제 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4호 중 “있거나”를 “생기거나”로 한다.

제39조의 제목 중 “통고”를 “통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통고하여야”를 “알려야”로 한다.

제56조의2 중 “통고·통지”를 “통지”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1조(심판원장 및 심판관의 직무) ① 중앙심판원장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p> <p>1. ~ 3. (생략)</p> <p>4. 각급 심판원의 심판관에 결원이 <u>있거나</u>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중앙심판원의 심판관은 지방심판원장으로, 지방심판원의 심판관은 다른 지방심판원의 심판관으로 하여금 심판관의 직무를 하게 할 수 있다.</p> <p>② ~ ④ (생략)</p>	<p>제11조(심판원장 및 심판관의 직무) ①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 ----<u>생기거나</u>----- ----- ----- ----- ----- ----- -----.</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39조(해양사고관련자의 지정과 통고) ① (생략)</p> <p>② 조사관은 제1항에 따라 해양사고관련자를 지정하면 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해양사고관련자에게 <u>통고하여야</u> 한다.</p>	<p>제39조(해양사고관련자의 지정과 통지)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 ----- ---<u>알려야</u>-----.</p>
<p>제56조의2(송달의 방식) 해양사고관련자, 심판변론인 또는 대리인에 대한 <u>통고·통지</u> 또는 서</p>	<p>제56조의2(송달의 방식) ----- ----- -----<u>통지</u>-----</p>

류의 송달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 -----.
--------------------------------	-----------------